

대구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0가단1439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30583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0가단143929 판결

전문

원고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

피고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형근

변론 종결2023. 1. 17.

판결 선고2023. 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B와 C 사이에 2019. 2. 12. 체결된 매매계약, C와 D 사이에 2019. 3. 26. 체결된 매매계약1) , D와 피고 사이에 2019. 3.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2) 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법 E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2020. 6. 26. 작성된 배당표에 기하여 가지는 55,424,592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법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임대인)인 B와 한국정보화진흥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이하 '진흥원'이라 함) 사이에 전세보증금 86,000,000원, 전세기간 2017. 7. 10.부터 2019. 7. 31.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위 전세계약기간 중에 원고와 진흥원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채무자)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채권자)이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7. 7. 25. 원고는 보증채권자를 임차인으로, 주채무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를 아래 표와 같이 발급하였다.

[표]

F	진흥원	17.7.25.~19.8.31.	86,000,000원	86,000,000원
---	-----	-------------------	-------------	-------------

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 제10조 1항 소정의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진다."에 따라 보증사고로 채권자가 보증채권자(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 하였을 때, 채권자는 주채무자(임대인)에게 구상권을 가진다.

마. 진흥원은 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채권양도 내용을 임대인인 B에게 통지하였다.

바. 위 전세계약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2019. 2. 12. 매매계약(거래가액 90,000,000원)으로 B에서 C로 변경되었고3), 2019. 3. 26. 매매계약(거래가액 90,000,000원)으로 C에서 D으로 변경되었다4). D은 2019. 3.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2,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

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이 2019. 7. 31. 종료되었음에도 당시 임대인인 D이 진흥원에게 전세보증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진흥원은 원고에게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9. 11. 28. 이 사건 보증의 보증채권자인 진흥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9. 8. 22. 위 법원 E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금에 관하여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55,424,592원, 원고에게 14,484,860원이 배당이 되도록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함)를 작성한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 배당기일(2020. 6. 26.)에 배당이의를 하고, 2020. 7. 2.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22984호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자. 한편, 원고는 부산지법 2020가단316641호로 B, C, D을 상대로 공동하여 구상금 8,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10. 14.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B, C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차.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각 채무자에 해당하는 B, C, D의 각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별지 표] 각 기재와 같은바, B, C는 무자력이 아니고, D은 무자력이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갑 16,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대전광역시 동구청, 용인시 수지구청, 청주시 흥덕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위 각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제척기간 도과 항변' 기재와 같이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처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인이었던 B만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H' 건물에 수십 건의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로서 구상금 소송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원고가 관련사건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가단316641 판결)은 양수인들인 C, D도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대한 채무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관련사건 제소 이전에 원고는 임차인인 진흥원이 법인이었으므로 보증금반환채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수익자로만 여겼던 양수인 D이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전득행위로 보았을 것이지 이를 새로운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며, D에 대하여 채무자로서 사해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인식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익자로만 여겨졌던 D이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이미 원고가 2019.경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처분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는 관련사건이 진행되어 수익자인 D도 채무자로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인식이

생긴 이후에야 동인과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원고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원인을 안 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2021. 5.경에야 수익자였던 D을 채무자로서 명확히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한 2021. 5. 24.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행위를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보았다거나 D에게 채무자로서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대한 제척기간은 준수되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B, C에 대한 각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

원고의 위 각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매매계약 당시 B, C가 무자력이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청구 부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 D은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B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채무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보증약정에 터 잡아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D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한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훼손시키고 무자력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인가 및 운영 등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을 1 내지 을 4-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거래관계가 없어 그의 채무관계나 신용·재산상태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실, 피고는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8,800만 원으로 평가한 감정액 한도 내에서 5,2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당시 D으로부터 임대차관계 확인서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제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배당표상 55,424,592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출 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대출심사를 하고 있고 임직원의 부실대출에 대하여는 위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의 위 대출담당자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상회복 청구 부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참조). 한편,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위와 같이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참조).

따라서 수익자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에 대하여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413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5).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명

별지

- 1) 2021. 5. 24. 청구취지 변경하면서 비로소 청구함.
- 2) 2021. 5. 24. 청구취지 변경하면서 비로소 청구함.